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352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3520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233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23360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26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금융자산 31,650원)"	금융자산 31,650원, 1원 단위 절삭)
제3쪽 제15행의 "이 법원의"	제1심법원의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별지